

정 관

第1章 總 則

第1條 (名稱) 本會는 社團法人 韓國健康管理協會 (以下 本會라 한다) 라 稱한다.

第2條 (主事務所) 本會의 主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3條 (目的) 本會는 非傳染性 慢性疾患의 早期發見 및 豫防을 爲한 效率的인 臨床 病理的 檢査 및 檢診, 疫學的 調查研究 및 保健啓蒙을 實施하여 國民의 健康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綜合檢査 施設 및 運營
2. 地域住民 및 各種團體員에 對한 集團檢査
3. 臨床病理的 檢査
4. 國民健康管理에 對한 調查研究
5. 國民健康管理에 對한 啓蒙 및 教育
6. 國民健康管理을 爲한 國際的 交流
7. 各級 保健醫療機關에서 依賴하는 臨床檢査
8. 發見患者 專門治療機關에 治療斡旋

9.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을 爲한 必要한 事項

第5條 (支部設置) ①本會는 必要한 경우에는 各市·道에 支部를 둘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는 代議員總會의 決議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支部長은 支部運營委員會의 推薦을 받아 會長이 委囑한다.

第6條 (諸規定) 本會의 運營에 必要한 諸規定을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定한다.

第7條 (告示) 本會의 通常의 告示事項은 事務所 게시판에 게시 하고 特別告示事項은 1個 日刊 新聞에 게재한다.

第2第 會員 및 會費

第8條 (會員) ①本會는 다음의 會員으로 構成한다.

1. 正會員
2. 特別會員

②正會員은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贊同한 者로서 定額의 會費를 納付한 者를 말한다.

③特別會員은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贊同하고 이에 積極 參與하는 者로서 所定의 特別會費를 納付한 者를 말한다.

第9條 (入會節次) ①本會에 入會코자 하는 者는 本會 所定의 入會願書에 署名捺印함과 同時에 規

定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所定の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②入會願書는 本部에서 保存하고 各 支部에서는 會員原簿를 保管한다.

第 10 條 (會員의 權利). ①正會員은 支部總會에서 代議員의 選舉 및 被選舉權을 갖는다.

②會員은 本 會의 規定에 定하는 바에 의하여 本 會의 諸般施設을 利用할 수 있다.

第 11 條 (會員의 懲戒) 會員으로서 本 會의 定款 또는 諸規定을 履行치 않거나 本 會에 대하여 財産上 損害를 끼치거나 名譽를 毀損할 시는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損害賠償請求 또는 除名處分을 할 수 있다.

第 12 條 (會費) ①本 會의 會費는 다음과 같이 區分하고 金額은 理事會의 決議를 받아 會長이 定한다.

1. 入會費
2. 正會員費
3. 特別會員費

②會費는 前納으로 하며 既納會費는 返還하지 않는다.

第 3 章 任員 및 委員

第 13 條 (任員) ①本 會는 다음各號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 名
2. 副會長 1 名 (必要에 따라 1

名 追加할 수 있음)

3. 理事 7 名以上 11 名 以内 (會長, 副會長 包含)

4. 監事 2 名

②任員은 代議員 總會에서 選出하며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14 條 (會長의 職務) 會長은 本 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第 15 條 (副會長의 職務)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有故時는 會長이 指名한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 16 條 (監事の 職務) ①監事는 本 會의 財産과 會務의 執行狀況을 監査하여 그 結果를 代議員總會 또는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17 條 (任員의 任期) ①任員의 任期는 3 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但 補選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②本 會의 任員은 名譽職으로 하고 報酬는 支給치 않는다.

第 18 條 (顧問) ①本 會에 顧問若干名을 둘 수 있다.

②顧問은 學識 및 經驗이 豊富한 著名人士로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委囑한다.

③顧問은 本 會 運營의 基本方針에 關한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 19 條 (專門委員 및 諮問委員)

①本會의 必要에 따라 分科別 若干名의 專門委員과 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②專門委員은 分科別로 專門的인 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로서 理事會의 推薦을 받아 會長이 委囑한다. 但 委員長은 各 委員會에서 互選한다.

③專門委員은 本會의 各 專門分野의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④諮問委員은 本會의 趣旨에 賛同하는 者로서 理事會의 推薦을 얻어 會長이 委囑한다.

⑤諮問委員은 本會의 一般事項에 關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4章 代議員總會

第20條 (構成) 代議員總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1. 各支部 總會에서 選出한 代議員 各1名
2. 本會 任員

第21條 (任期) 代議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但 補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22條 (代議員 總會의 種類)

代議員總會는 定期 代議員 總會와 臨時 代議員 總會로 區分한다.

第23條 (召集) ①定期 代議員總會는 年1回 每年 11月中에 開催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②臨時 代議員 總會는 代議員 3分之1 以上の 要請이나 理事會 또는 監事의 要請이 있을 때와 保健社會部長官의 要請이 있을 때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③代議員 總會의 召集은 1週間前에 그 會議의 目的을 記載한 通知를 發하여야 한다.

第24條 (議長) ①會長은 代議員 總會의 議長이 된다.

②議長은 表決權이 없으며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決定權을 갖는다.

第25條 (定足數) ①代議員 總會의 決議는 이 定款에 別途規定이 없는 한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②代議員 總會가 決議하려는 事項이 定款改正일 경우에는 在籍代議員數의 3分之2 以上の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本會 解散에 關한 事項을 決議할 때에는 在籍代議員 4分之3 以上の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26條 (議決事項) ①代議員 總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1. 任員選出 및 彈劾
2. 定款變更에 關한 事項
3. 本會 解散에 關한 事項
4. 支部設置 및 統廢合에 關한 事項

5. 事業計劃, 歲入歲出豫算에 관한 事項

6. 補助金 事業에 관한 事項

7. 其他 理事會에서 題出한 事項

②第1項中 第1號내지 第4號에 規定된 事項은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第1項中 第5號 및 第6號에 規定된 事項은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27條 (議事錄) 代議員 總會의 議事는 議事錄에 記載하고 代議員 總會에서 指名한 代議員 3名 (會長包含) 以上이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5章 理事會

第28條 (構成) 理事會는 本會 理事로서 構成한다.

第29條 (理事會의 種類) 理事會는 定期 理事會와 臨時 理事會로 區分한다.

第30條 (召集) ①定期 理事會는 年 2回 開催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②臨時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 또는 理事 過半數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31條 (議長) ①會長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②議長은 表決權이 없으며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決定權을 갖는

다.

第32條 (定足數) 理事會의 決議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의 過半數 贊成으로 한다.

第33條 (議決事項) ①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1. 事務總長 任免에 對한 認准에 관한 事項

2. 顧問, 專門委員 및 諮問委員 推戴에 관한 事項

3. 缺員理事 補選에 관한 事項

4. 事業計劃 및 歲入歲出豫算編成에 관한 事項

5. 事業計劃變更 및 追加更正豫算에 관한 事項

6. 諸規程 制定 및 改正에 관한 事項

7. 會員의 表彰 또는 懲戒에 관한 事項

8. 基本財産의 取得處分 및 變更에 관한 事項

9. 會費의 決定 또는 變更에 관한 事項

10. 補助金 事業에 관한 事項

11. 其他 事業遂行上 必要한 事項 및 代議員 總會에 附議할 事項

②第1項中 第1號, 第3號 및 第8號에 規定된 事項은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第1項中 第5號에 規定된 事項은 翌年度 代議員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34 條 (議事錄) 理事會의 議事는 議事錄에 기재하고 理事會에서 指名한 理事 3 名 (會長包含) 以上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 6 章 委員會

第 35 條 (組織) ① 本會의 事業達成을 爲하여 必要한 各種 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委員會의 運營에 關한 事項은 別途 規定으로 定한다.

第 7 章 執行機構

第 36 條 (事務局) ① 本會의 目的事業을 達成하고 業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에는 事務總長 1 人을 둔다.

② 事務總長은 社團法人 韓國寄生蟲撲滅協會 事務總長이 兼職할 수 있다.

③ 事務局의 職制 및 職員은 社團法人 韓國寄生蟲撲滅協會 職員이 兼職할 수 있다.

第 37 條 (事務總長 任務) 事務總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다음 各號의 任務를 遂行한다.

1. 職員의 指揮監督
2. 代議員總會 및 理事會에서 議決된 諸般事項의 處理

第 8 章 財政 및 會計

第 38 條 (財産) ① 本會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② 基本財産은 土地, 林野, 雜種地

建物 其他 不動産과 基本財産에 속한 現金을 말한다.

③ 普通財産은 前項以外的 모든 財産으로서 다음 各號의 收入金を 말하며 本會의 事業 및 運營經費에 充當한다.

1. 會費
2. 事業收入金
3. 補助金
4. 寄附金
5. 其他

④ 第 1 項, 第 2 項 및 第 3 項에서 規定한 財産에 關한 規定은 別途로 定한다.

第 39 條 (基本財産의 處分) 本會에서 基本財産을 讓渡, 交換, 賣渡, 贈與, 擔保, 其他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에서 在籍理事 3 分之 2 以上の 贊成을 얻어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40 條 (收入資金의 預置) 本會의 財産中 現金은 우체관서, 銀行 및 農協에 預置한다.

第 41 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1 月 1 日부터 同年 12 月 31 日까지로 한다.

第 42 條 (事業計劃 및 豫算) 本會의 事業計劃 및 豫算은 每會計年度 開始前에 理事會 및 總會의 議決을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43 條 (決算) ① 本會의 每年度 事業實績과 收支決算은 監事의 監査를 得한후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年度閉鎖後 2個月 以內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實績 및 收支決算書는 翌年度 代議員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44 條 (補助) 本會의 收入金은 豫算許容範圍內에서 學術研究補助等에 使用할 수 있으나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 45 條 (會計事務) 本會의 會計事務取扱에 관하여는 豫算會計規程에 의하고 이에 規定되지 않은 事項은 豫算會計法에 準한다.

第 9 章 解 散

第 46 條 (解散) 民法 第 77 條 規定에 의한 解散事由에 의하여 本會를 解散코자 할 때에는 代議員 總會의 決議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47 條 (財産處理) 本會를 解散할 시는 政府財産은 政府에 返還하고 其他 殘餘財産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類似團體에 寄附한다.

附 則

1. (施行日) 本 定款은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日로부터 施行한다.

韓國健康管理協會 任員 名單



會 長 徐 丙 高

副會長 蘇 鎮 埠

理 事 權 彝 赫

" 金 思 達

" 金 恩 雨

" 金 載 正

" 沈 雲 澤

" 劉 奇 洙

" 林 漢 鍾

監 事 金 周 成

" 李 周 植